

#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 정신에 따라 기업경영 전반 및 국제교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심오하게 연구·교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관련 전문가와 지도급 전문경영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3.6.24.>

**제2조(명칭)** 대학원의 명칭은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03.6.24.>

**제3조(설치과정)**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·최고경영자과정·관리자과정 및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과정 및 기업체 위탁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전공 및 정원)**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·전공 및 학생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9.2.27.>

**제5조(수업)**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제로 운영한다.

②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공별 공통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제2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

**제6조(직제 및 교수)** ①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,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와 전임교수를 둘 수 있고, 과정별로 과정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9.22.>

② 전공주임교수 및 과정주임교수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9.22.>

**제7조(대학원위원회)** ①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3.6.24.>

② 위원회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03.6.24., 2017.4.10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-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4.10.>

### 제3장 입학

**제8조(입학시기)**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 재입학의 경우도 같다.

**제9조(입학자격)**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
  - 가. 국내외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
  - 나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연구과정 : 석사학위과정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. 최고경영자과정·관리자과정 및 특별과정 :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

**제10조(외국인의 입학자격)**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. <개정 2003.6.24.>

**제11조(재입학)** ①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03.6.24., 2023.12.11.>

② 제적 전 동일과정에 한하며, 폐지된 전공의 제적생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유사 또는 동일 전공으로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2.11.>

**제12조(직원의 입학)**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입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3조(지원절차)**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(소정양식)
2. 졸업증명서(다만,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,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인정서로 한다)
3. 경력 및 재직증명서
4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
**제14조(전형방법)**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로 한다.

### 제4장 등록, 휴학, 복학, 퇴학 및 제적

**제15조(등록)**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,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.  
<개정 2011.2.28.>

**제16조(휴학과 복학)**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(관계증빙서 첨부)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3.12.11.>

②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3.12.11.>

1. 일반휴학 :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
2. 입대휴학 : 군복무로 인한 휴학
3. 질병휴학 : 질병으로 인한 휴학
4. 육아휴학 : 임신·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
5. 재난휴학 : 국가재난,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휴학
6. 직권휴학 :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이 명하는 휴학

③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1.>

④ 복학절차는 학기초 등록기간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1.>

**제17조(제적)**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퇴학원의 처리는 대학원장을 경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처리한다.

②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
## 제5장 수업, 학점, 시험 및 학위수여

**제18조(수업연한)**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(4학기),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05.6.16.>

② 기타 최고경영자과정, 관리자과정 및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.

**제19조(재학연한)**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(10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20조(수업)** 수업시간과 그 장소는 매 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1조(합동강의)**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이수과목)**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 및 학점(교과과정표)은 따로 정한다.

**제23조(이수과목 선택)**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전공별로 정하며,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4조(학점)** 재학중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따로 정하며,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. 다만, 학위논문대신 논문대체학점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10.2.26., 2019.5.21.>

**제25조(학점의 특별인정)** ①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② 우리대학교 특수대학원간 학점교류를 합의한 교과목을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교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 <신설 2005.6.16.>

**제26조(매학기 학점)** 학생은 매 학기 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시험)** 시험은 매 학기말 그 시간에 수업한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**제28조(학점인정)**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, 그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29조(성적등급)** 학업성적의 등급·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 급	점 수	평 점
A <sup>+</sup>	95 - 100	4.5
A	90 - 94	4.0
B <sup>+</sup>	85 - 89	3.5
B	80 - 84	3.0
C <sup>+</sup>	75 - 79	2.5
C	70 - 74	2.0
F	69 이하	0

**제30조(과정수료)** ①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제24조의 조건을 구비한 학생이 4학기의 재학연한을 마쳤을 때로 한다.

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생이 제출한 연구결과물이 통과된 매 학년말로 한다.

③ 기타과정의 수료 인정시기는 따로 정한다.

**제31조(수료증)** ① 대학원의 각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
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과 아울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 기타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
**제32조(학위신청 자격시험)** ① 대학원은 졸업에 앞서 학위신청 자격시험을 실시한다.

② 학생은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원장이 정한 외국어시험중 1종을 택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해당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.

④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2과목 이상으로 하고,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시험과목·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**제33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** ① 규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논문의 제출시기·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논문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. <신설 2019.5.21.>

**제34조(학위수여)**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,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09.2.27., 2019.5.21.>

②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. <개정 2019.5.21.>

## 제6장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

**제35조(등록금감면 및 장학금 등)** ①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석사과정과 특수과정의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6.16., 2017.4.10.>

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## 제7장 보칙

**제36조(준용규정)**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

**제37조(시행세칙)**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<제120호, 1998.6.9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<제139호, 1998.10.19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<제170호, 1999.2.19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218호, 2000.11.20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237호, 2001.6.27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241호, 2001.8.16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250호, 2001.10.2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301호, 2003.6.24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310호, 2003.11.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353호, 2005.6.16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406호, 2007.2.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477호, 2009.2.27.>

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526호, 2010.2.26.>

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799호, 2017.4.10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10호, 2017.9.22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11호, 2017.9.22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24호, 2019.5.21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32호, 2020.2.14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36호, 2020.6.4.>

이 학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62호, 2023.12.11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9.2.27., 2017.9.22., 2020.2.14.>

경영대학원 과정·전공 및 학생입학정원표

과 정	전 공	입학정원
석 사 학 위	경영학	40명

경대원 석 제 호

## 학 위 기

성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○ ○ 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경영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논문제목 :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(학위) 성명 직인

위의 인정에 의하여 경영학석사(전문분야)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성명 직인

학위등록번호 :

■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[별지 제2호 서식] <신설 2019.5.21.>

경대원 석 제 호

## 학 위 기

성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○ ○ 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경영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(학위) 성명 직인

위의 인정에 의하여 경영학석사(전문분야)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성명 직인

학위등록번호 :